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책

2012. 4. 17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검토배경	1
II. 현황 및 문제점	1
III. 개선방안	3
1. 기본방향	3
2. 현장실습 내실화 역량 강화	4
3. 현장실습생 근로조건 보호 강화	8
4. 현장실습을 중소기업 우수인재 양성통로로 개선	9
IV. 과제별 추진계획	12
붙임 1.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기반 교육제도(안)	14
붙임 2.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개정(안)	18
붙임 3. 시도교육청의 현장실습 운영지침(안)	26

I. 검토배경

- 현장중심의 미래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현장실습제도 정착이 고졸취업 문화 정책의 핵심**
- 특성화고 취업중심 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학교와 기업의 현장실습 내실화 역량 강화 필요
 - 동시에 기업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력 선호 등 기업의 인사관행과 문화에 대한 개선 노력도 필요
 - * 기아차 근로감독 결과 연장근로한도 초과(실습생 138명), 미인가 받은 연소자 야간 휴일근로(78명), 금품채불(2,038백만원), 86건 공상처리 후 산재 미보고 등으로 66건 범죄인지, 13건 과태료, 3건 사용중지

☞ **기업·학생·학교 모두가 공생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내실화 지원**

II. 현황 및 문제점

- ◆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는 교과부와 고용부 공동입법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 규율
 - * 동 법에서 현장실습 의무화(제7조), 표준협약서(고용부 고시)를 체결토록 규정
- ◆ 동법에 따라 현장실습시 학생 기업 학교가 표준협약서에 근거하여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 표준협약서는 '98년 1월 고시이후 개정된 적이 없어 변화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을 반영하기에는 한계
 - * 현장실습표준협약서는 실습기간, 실습방법, 사업주 의무 및 실습생 권리·의무 등을 규정
- ◆ 특성화고의 현장기반 교육(work-based learning) 프로그램 중 기업에서 하는 현장실습이 다수(16.7%)이며, 현장견학(14.3%), 초빙강연(12.6%), 직업탐색 활동(12.3%) 순임

□ 학교

- 산학연계와 취업지도 **역량과 경험을 갖춘 교직원 부족, 기업정보 부족** 등 학생의 전공과 적성에 적합한 **준비된 기업 발굴에 어려움**
 - * 현장실습의 어려움 : 산업체 정보 및 네트워크 부족(46.5%), 산업체 호응 부족(18.3%), 산업체 내 열악한 교육환경(10.4%)('11. 직능원 연구)
- 따라서, 일부 학교는 사전적 기업탐색, 학생 취업의지, 실습조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현장실습 추진
 - * 실습업무중 비전공분야 업무 30.8% ('11. 직능원 연구)

□ 학생

- 적성보다 학교가 매칭해 주는 기업에서 학업 대체와 급여 수령 등 **소극적으로 실습에 참가하여 직무만족도가 낮고, 부적응 호소**
- 장시간실습, 야간실습, 휴일실습 등 근로조건 보호의 사각지대 노출
 - * 1일 8시간 초과 실습(실습생의 38.3%), 1주 40시간 초과 실습(46.2%), 사전 합의 없는 실습시간 연장(11.9%), 야간실습(31.9%), 휴일실습(29.2%) ('12.1.19~2.3 고용부 실태조사)

□ 기업

- '교육목적'보다는 '**노동력 활용**' 측면이 강조되어 저임금 인력 활용하는 사례 존재
 - * 교대제 근무조에 편성되어 연장 야간 휴일실습 사례 존재, 실습생의 월평균 실습수당 1,182천원('12.1.19.~2.3. 고용부 실태조사)
- 미숙련 실습생 지도에 따른 직·간접 비용*에 대한 **보상미흡, 재해발생에 대한 부담감 등이 기업의 적극적인 실습 참여 저해**
 - * 직접비용(훈련수당,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간접비용(생산차질에 따른 비용 등)

□ 정책

- 현장실습을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업무로 이양한 후, 중앙단위에서 **제도개선이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지원체제 마련 소홀**
 - * '08.4.15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운영정상화방안('06.5) 폐지 등
 - 특히,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미흡
- 산업현장 우수인재 양성과 노동관계법 측면에서 모니터링 등 정책적 보완 여지 존재

III. 개선방안

1 기본방향

기업-학교-정부 연계하여 '맞춤형 인재양성' 중심으로 현장실습을 내실화

◆ 현장실습 내실화 역량 강화

- (기업) 현장실습 프로그램·인프라 지원
- (학생) 적성에 맞는 기업선택 및 적정대우 보장 지원
- (학교) 산학연계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역량 강화
- (정부) 모니터링·감독 강화

◆ 현장 실습생 근로조건 보호 강화

-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실습생 법적 지위 명확화
- 근로계약 체결 지도

◆ 현장실습을 강소기업 우수인재 양성 경로로 개선

- 강소기업-학교-학생간 교류 확대
- 강소기업-학교-정부 연계 현장실습 우수모델 개발·보급
-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1 현장실습 내실화 역량 강화

◆ 현장 실습을 통해 학생이 현장직무기술을 습득하고, 현장근로를 체험하여 안정적으로 입직할 수 있도록 학생-학교-기업의 실습 역량을 제고

- (기업) 현장실습 프로그램·인프라 등 지원
- 특성화고 학생 현장실습 매뉴얼 배포(고용부)
 - 현장실습의 목적, 학생 모집부터 실행까지 절차, 유의사항 등 기업의 행위준칙이 포함된 현장실습 매뉴얼 배포(4월)
 - *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핸드북을 책자 전자파일로 보급
 - 기업 학교 정부 전문가 등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행위준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매뉴얼 활용 '세미나' 개최
- 현장실습 인프라 및 비용지원(고용부, 중기청)
 - 체계적현장직무훈련(S-OJT)지원사업*을 활용, 현장실습생 OJT 프로그램 개발, OJT전담자 등 지원(고용부)
 - * (S-OJT 사업) 현장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 개발, 전담 트레이너 양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
 - 특성화고 학생에게 교육 및 진로설계 목적의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기업에게 발생하는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을 통해 수당지원(월 40만원, 4개월 이내, 고용부)
 - ** 실습 인프라 구축, 강사비 지원 등(연수업체인증 시범사업, 중기청)
- 다양한 현장학습 활동에 따른 학생 사고 보상 강화(교과부)
 -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장범위를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중 재해까지 확대
 - * 학교안전공제회 보장 범위에 학교장이 인정하는 현장실습을 포함하고, 산재보험 적용시 보험급여 상당액을 제외하고 공제급여 지급('12.4.1부터 시행)
 -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한 현장실습은 산재보험이 적용

□ 사전 적응훈련 지원(고용부)

- 한국폴리텍대학 실습장비를 활용하여 1주 내외 사전 적응훈련을 지원, 기업의 집체형 오리엔테이션 부담 완화
 - * 중소기업의 경우 집체형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 여력 등이 부족
- 기업 장비와 특성화고 실습장비간 격차로 인한 기업 재교육 부담을 완화, 노동관계법 직장예절 현장실습 절차 등 교육
 - * (주식회사 네오바이오텍)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시 관련 장비 운용 등 기초적인 지식이 없어 사전교육 필요성 제기('11.12.)

② (학생) 적성에 맞는 기업선택 및 적정대우 지원

□ 학생 진로지도 지원(고용부, 교과부, 중기청)

- 한국잡월드 직업체험프로그램, 한국폴리텍대학 청소년 직업체험 캠프, 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적성검사를 활용, 학생의 진로지도를 지원(교과부, 고용부)
- 올바른 직업관 형성,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을 위한 연수과정 운영(교과부, 중기청)
- 모든 특성화고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진로체험 매뉴얼 개발 보급, 상설 진로캠프 운영(교과부)
- 근로기준 산업안전 성희롱예방 등 노동관계법 사전교육을 통해 권리와 의무, 유의사항 등에 대한 이해 지원(고용부, 교과부)

□ 현장실습 핸드북 배포(고용부)

- 학생이 현장실습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배포
 - 꼭 알아야할 5대 수칙*을 핸드북 형태로 제작하여 활용도를 제고
 - * ①실습생의 권리와 의무, ②현장실습 중 주의해야 할 산업안전·보건, ③성희롱 예방, ④기본 직장예절, ⑤현장실습 중 문제발생시 조치방법 등

□ 표준협약서 개정·고시(고용부)

- 현장실습의 정상화와 변화된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98년 제정된 표준협약서 개정
 - 개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노동관계 기본법령, 남녀고용평등법을 포함하여 고시(4월)

<개정내용>

- ▶ 현장실습전 학교에서 실습계획, 실습방법 및 준수사항 등 사전교육 의무화
- ▶ 기업의 노동관계법 교육 의무화(근로기준, 산업안전, 성희롱 예방 등)
- ▶ 장시간 실습억제(1일 7시간, 주 40시간), 1주 2회 휴무보장, 야간 휴일실습 금지
- ▶ 안전보건상 조치내용 구체화, 산재보상 명확화 등

③ (학교) 산학연계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역량 강화

□ 교원의 현장실습제도 운영 역량 강화(교과부, 고용부)

- 특성화고 교원 산업체 현장 직무연수 ('12.7월~)에 노동관계법 현장실습운영절차 등 '현장실습 지도과정'을 포함(고용부)
- 특성화고 교장, 교감, 취업부장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보건 및 근로관계법 연수 실시(교과부)

□ 산업체 전문가 활용, 학교의 취업지원 역량 강화(교과부, 고용부)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취업지원관 및 산업체우수강사 등 기업 인사노무 경력자를 통해 현장실습 기업선별, 기업과 네트워크 유지, 학생의 근로조건 모니터링 등 지원(고용부, 교과부)
 - * (고용부)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명장, 기술사 기능장, 퇴직우수인력 등) 95명
 - ** (교과부) 산업체 현장경력 강사 650명, 취업지원관 350명
- 실습업체 관계자를 (가칭)'산학협력교사'로 위촉, 실습생 지도
- 시·도교육청은 학교의 실습협약 체결, 실습생 지도시 필요한 경우 공인노무사 등이 자문할 수 있도록 지원 (교과부)

□ 학교용 취업지원·현장실습 매뉴얼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자료 개

발·보급(교과부)

- 현장체험, 현장실습 등의 유형별 매뉴얼을 농업, 공업, 상업, 수산 해양, 가사 실업 등 5대 계열별로 개발 보급
- 예비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계열별 학과별 지도자료 개발 보급
- 학교의 취업지원인력의 역량모델 개발, 취업지원 매뉴얼 개발·보급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 (한국고용정보원) 상반기에 취업지원인력의 역량모델 및 매뉴얼을 개발하고, 하반기에 학교의 취업지원인력에 대한 연수를 실시

④ (정부) 모니터링·감독 강화

□ 교과부

- 학교는 표준협약서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평가하고 시도교육청은 학교별 현장실습계획과 모니터링 평가결과를 통합 관리
 - * 모니터링 평가결과는 16개 시도교육청이 상호 공유
- 시 도교육청은 학교별 현장실습 계획과 현장실습 모니터링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지방고용청에 송부
 -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시 보통교과 이수대책 등 점검
 - * 모니터링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 산업체 등의 리스트를 구축하여 함께 통보

□ 고용부

- 고용부는 시 도교육청이 송부한 현장실습 평가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 사업장 근로감독계획에 반영하여 정기적 실태조사
- 기업의 현장실습 가이드라인 준수 등 현장실습 우수사례를 발굴(직능원),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 가이드라인 활용정도를 주기적 분석, 성과 평가하여, 이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여 최신성을 유지

2

현장실습생 근로조건 보호 강화

◆ 채용 내정 등 취업과 연계되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기업도 노동력 활용 측면에서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경우 실습생을 근로자로 보호
→ 산업계의 잘못된 인력운영 관행을 바로 잡아 현장실습생 제도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

① 법적 지위 명확화(고용부)

- 명목상 현장실습생으로 일부 OJT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채용을 약정하고 교대제 근무조 편성 등 사업장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키는 경우 근로계약(시용계약 등)을 체결

→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로서의 인정, 권리 보호

② 근로계약 체결 지도(고용부, 교육부)

- 사실상 취업과 연계되어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업과 학생이 실습협약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도
 - 학기 중 학생·기업이 합의 하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학생·기업·학교 간 실습협약을 체결하여 학생의 학습을 지원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 판단>

- 실습생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착안사항(예시)
 - 일반 근로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근무(실습)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 일반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과정에서 직접 참여 또는 보조하는 경우(특히 일반근로자와 유사하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참여하는 경우)
 - 작업 및 근무지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보수의 성격(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현장실습 제도를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확보하는 데 한계
- ◆ 중소기업과 특성화고를 연결하는 정보통로, 우수 현장실습모델, 특성화고 학제개편 모델 등을 발굴·확산
- 특성화고 학생의 중소기업 기피 풍조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1] 중소기업-학교-학생간 교류 확대

- 고졸 취업자를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인재로 육성하는 캠페인 전개(고용부, 교과부, 중기청)

- 경제단체, 고용부 교과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추진

※ 교과부-중기중앙회, 인재육성 캠페인 추진을 위한 MOU 체결('12.3.27), 경제단체(중기중앙회 대한상의 경총)-정부(고용 교과부 중기청),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 지원 MOU 체결('12.4.17)

- 중소기업 DB 구축 및 연계 활용 지원(고용부, 교과부, 중기청)

- 경제단체(중기중앙회 대한상의 경총)와 정부(고용부 교과부 중기청)가 공동으로 중기청의 우수중소기업 DB(3.3만개) 활용도 제고

- 워크넷 HRD넷과 연동하여 기업 근로조건 채용정보 등을 공유, 특성화고 포털*과 연계하여 취업진로지도에 활용 지원

* 특성화고 포털(www.hifive.go.kr) 7월 중 개통 예정

- 중소기업 정보를 DB로 구축하고 학생·학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으로도 개발하여 제공

* 중기청의 스마트 폰 앱(우수 중소기업 취업도우미) 서비스를 개편 확대

- “취업하고 싶은 500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취업 지원

- 2] 다양한 「우수현장실습모델」 제공을 통한 현장맞춤 인재양성

- 중소기업-학교-정부 연계 현장실습 우수모델 개발·보급(고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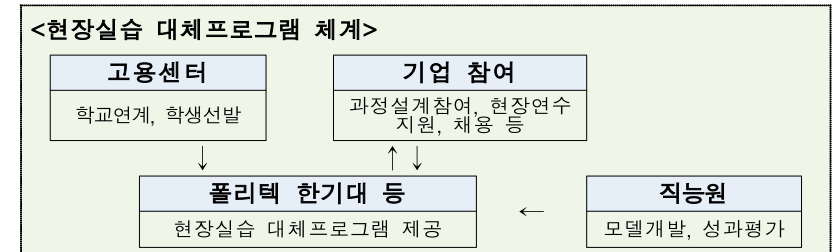
- (1단계) 고용센터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학교(학생)을 발굴 채용 연계하여 중소기업 맞춤형 실습훈련 제공

* 중소기업의 경우 재직자 향상훈련의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 지원 필요

- (2단계) 폴리텍 한기대 등의 실습시설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참여(과정설계, 현장연수 제공)하는 현장실습 모델 개발

- 현장실습 모범사례 등을 기반으로 직능원-한기대-폴리텍 공동으로 시범과정 개발 평가, 현장 확산

* 학생에게 직업 및 기업탐색 기회 제공 → 기업연계 현장실습 실시 → 시용계약 → S-OJT 지원(훈련비 및 인건비) → 평가 후 정규직 근로계약



- 일부 특성화고를 선정, 고용부 고용지원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패키지를 활용하여 현장실습 우수학교 모델 개발

- 기업-학생(학교) 연계 맞춤형 실습지원(중기청)

- 취업 희망 특성화고생과 중소기업간 협약을 통해 취업보장 맞춤형 구성, 기업수요를 반영한 현장실습 실시(89개교, 3.3천명)

* 기업-학생 협약('12.4월) → 취업보장 맞춤형 운영(맞춤훈련 '12.6~9월, 현장실습 '12.10~13.1월) → 협약기업 취업(졸업 후)

- 중소기업의 다양한 애로기술 과제를 도출하고, 특성화고 학생·교사 등이 공동 참여·해결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 과제수행을 통해 기업현장 적응력 향상 및 취업 연계
- * 중소기업 특성화고 육성사업 참여학교 대상으로 1팀(교사+학생) 1기업 프로젝트 60개 과제를 선정 운영('12.4~12월)

③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고용부, 교과부)

□ 청년인턴제를 활용한 인건비 지원(고용부)

- 청년인턴제 사업을 활용하여 졸업예정(3학년 2학기) 특성화고 학생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지원 추진
- 조기취업 현장실습 →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
- * 상시 5인 이상 중소기업에게 조기취업형 현장실습 기간 6개월간 임금 50%(80만원 한도), 정규직 전환 후 6개월간 월 65만원 정액지원(최대 870만원)

□ 사업주 훈련을 통한 훈련비 지원(고용부)

- 사업주의 채용예정자 현장훈련과정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현장실습생의 OJT 등에 대한 훈련비 지원
- * ①현장훈련 전 집체·원격훈련 실시 ②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10 이상의 이론교육 실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인정
- 사업주 훈련을 통한 현장실습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채용예정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시 소요비용 세액 공제(교과부)

- 기업이 학교와의 사전 협약을 통해 채용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기업에서 현장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11.12.31 개정)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의17('12.22 개정)에 따라 12년 상반기 중 지원대상 교육훈련과정 등 지원기준 제정

IV. 과제별 추진계획

1. 현장실습 내실화 역량 강화

추진과제	추진일정	관계부처	
		주관부처	협조부처
(1)(기업) 현장실습 프로그램·인프라 등 지원			
①기업용 특성화고 현장실습 매뉴얼 배포	'12.4월~	고용부	
②현장실습 인프라 및 비용지원	'12.상~	고용 교과부, 중기청	
③다양한 현장학습 활동에 따른 학생사고 보상 강화	'12.4월~	교과부	고용부
④사전 적응훈련 지원	'12.하~	고용부	
(2)(학생) 적성에 맞는 기업선택 및 적정대우 보장지원			
①학생 진로지도 지원	'12상~	고용 교과부, 중기청	
②현장실습 핸드북 배포	'12.4월~	고용부	
③표준협약서 개정·고시	'12.4월~	고용부	
(3)(학교) 산학연계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역량 강화			
①교원 현장실습제도 운영 역량강화	'12.4월~	고용 교과부	
②산업체 전문가 활용, 학교의 취업지원 역량 강화	'12.4월~	고용 교과부	
③학교용 취업지원 현장실습 매뉴얼 등 보급	'12.7월~	교과부	
(4)(정부) 모니터링 감독·강화			
①모니터링 및 감독강화	상시	교과 고용부	

2. 현장실습생 근로조건 보호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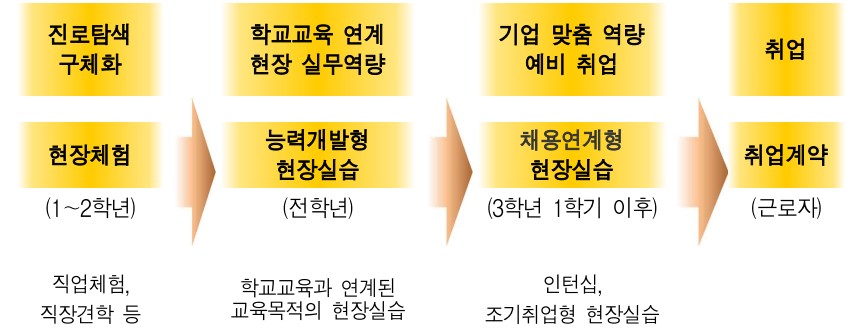
추진과제	추진일정	관계부처	
		주관부처	협조부처
(1)법적 지위 명확화			
① 현장실습생 노동관계법 적용	'12.4월 ~	고용부	
(2)근로계약 체결 지도 제도화			
① 근로계약 체결 지도	'12.하.~	교과 고용부	

3. 현장실습을 중소기업 우수인재 양성 통로로 개선

추진과제	추진일정	관계부처	
		주관부처	협조부처
(1)강소기업-학교-학생간 교류 확대			
① 고졸 취업자 미래 인재 육성 캠페인	'12.상~	고용 교과부 중기청	경제단체
②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13.상~	고용 교과부, 중기청	경제단체
(2)다양한 「우수현장실습모델」 제공을 통한 현장 맞춤형인재 양성			
① 강소기업-학교-정부연계 현장실습 우수 모델 개발 보급	'12.하~	고용부	
② 기업-학생(학교) 연계 맞춤형 실습지원	'12.상~	중기청	
(3)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① 청년인턴제 활용 인건비 지원	'12.하~	고용부	
② 사업주 훈련을 통한 훈련비 지원	'12.하~	고용부	
③ 채용예정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시 소요 비용 세액공제	'12.하~	교과부	

<붙임 1>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기반 교육제도(안)>



1] 기업체 맞춤형 인재 양성 현장교육

- 두산중공업은 창원기계공고에 '두산반'을 설치하여 자체 개발한 기초직무 기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자를 채용
 - ① (1학년말) 두산반 학생 선발('11년도 2,3학년 각 20명 선발)
 - ② (2학년~3학년1학기) 월3회 12시간 방과후 학습(총 120시간)
* 기업체 독자 개발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활용, 기업체 기술자 파견 지도
 - ③ (2학년 여름 겨울방학) 두산중공업 현장교육(120시간)
 - ④ (3학년 7월) 평가 우수자 50% 취업 확정후 현장실습
- 삼성전자 현대차는 17개 마이스터고 1학년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기업 맞춤형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졸업과 동시에 기술자로 채용
 - <삼성전자> ('11년부터)
 - ① (1학년 말) 삼성전자 장학생 선발(매년 100~200명)
 - ② (2학년 여름방학) 오리엔테이션 및 맞춤형 직무교육(3주)
 - ③ (2학년 겨울방학) 근무예정 부서배치, 과제중심 현장실습
 - ④ (3학년 여름방학) 근무예정 부서 현장실습(OJT)
 - ⑤ (3학년 12월) 채용
 - <현대자동차> ('12년부터)
 - ① (1학년 말) 현대자동차 장학생 선발(매년 100명)
 - ② (2학년~3학년방학) 사내 교육시설에서 기술 교육
 - ③ (졸업) 집체교육 및 부문별 현장학습(6개월)후 인턴 채용
* 군 복무후 정규직 전환

- 하나마이크론과 포항제철공고는 반도체 기술인력에게 요구되는 **사전훈련을 학교 교육중 현장체험→훈련기관 연수→맞춤형 교육으로 이수토록하여**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 양성
 - ① (2학년) 채용예정학생 선발('11년도 20명)
 - ② (2학년 여름방학) 사전 직무교육(2일), 생산공정 실습체험(7일)
 - ③ (2학년 겨울방학) 한국기술교육대 반도체장비유지보수과정 직무훈련(1월)
 - ④ (3학년 1학기) 맞춤형 직무교재를 공동개발, 엔지니어 파견 방과후 지도(6개월)
 - ⑤ (3학년 2학기) 산업체 현장실습후 채용
- (주)신홍화학은 최신 금형사출기를 부천공고 학교기업(부공금형)에 무상임대하여 **학교내에서 현장직무기술 훈련**을 지원
 - ① (1, 2학년) 채용예정학생 선발('11년도 1학년 11명, 2학년 6명)
 - ② (전학년 방과후, 주말, 방학) 학교기업에서 회사 파견 명장 기술 지도
 - * 학교기업 실습 시간 : 1학년 160시간, 2학년 200시간, 3학년 240시간
 - ③ (3학년 2학기) 산업체 현장실습후 채용
- 대한상의 인력개발원과 특성화고 공동실습소는 **개별학교에서 어려운 기업 수요 첨단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협력업체에 취업매칭
 - ① (2학년 1학기) 취업인턴제 참여 학생 선발('11년도 229명)
 - ② (2학년 2학기) 특성화고 공동실습소 직업기초능력 교육
 - ③ (2학년 겨울방학) 인력개발원 기초실습교육
 - ④ (3학년 1학기) 특성화고 공동실습소 직업기초능력 심화교육
 - ⑤ (3학년 여름방학) 인력개발원 심화실습교육
 - ⑥ (3학년 2학기) 취업매칭 및 산업체 현장실습
- (주)SPC는 고교 2학년생을 선발, **자체 교육장을 활용하여 1년 과정 제과 제빵 교육을 실시**하고, 집체훈련후 현장 배치
 - ① (2학년) 채용예정학생 선발('10년부터 매년 20~25명 내외)
 - ② (2학년 2학기~3학년1학기) SPC 교육장 128시간 교육(4+1 교육시스템)
 - ③ (3학년 2학기) 인턴사원 집체교육(6주)후 현장배치 실습
 - * 성적우수자 직영점 우선 취업 / 취업여부는 학생 선택
 - * 근무평가 우수자는 사내대학(SPC 식품과학대학) 입학기회를 부여, 군복무후 복직 시 경력인정

② 채용후 능력개발 지원 현장교육

- 플라자호텔과 한국외식과학고는 **현장실습부터 4일 근무, 2일 학교교육이 가능한 근무조건**을 발굴, 취업과 학업을 병행토록 지원하여, 진학 등으로 조기퇴사율과 전직율이 높은 관광업계의 애로사항 해소
 - ① (3학년 1학기) 채용예정학생 선발('11년 17명)
 - ② (3학년 여름방학) 사전직무훈련 및 현장실습(1개월)
 - ③ (3학년 2학기) 인턴채용 확정, 현장실습(주 4일근무)
 - ④ (졸업) 산업체 위탁과정 졸업시까지 인턴 고용보장(4일 근무, 2일 대학교육)
 - ⑤ (대학졸업후) 정규직 전환 (인턴후 정규직 전환율 8~90%)
 - * 송곡관광고+프리마호텔 등 관광계열 특성화학교 다수 운영
- (주)와이즈산전은 ERP시스템 등 **필요한 직무분야 교육이 우수한 특성화고를 선정**하여 학생을 채용하고, **자체 교육을 통해 전문가로 양성**
 - ① (3학년 1학기) 채용대상자 확정('11년 삼일상고 8명)
 - ② (3학년 2학기)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사전직무교육, 월2회 학교 등교)
 - ③ (졸업) 회사 자체 전문가 양성 사내교육 프로그램 운영(1년 과정)
 - * 주 생산품인 온도계, 유량계 등의 ERP생산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고등교육 수준의 기술 양성 교육 실시(고졸 출신 간부 다수 배출)
- (주)아진산업과 경북교육청은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해외사업장 현장실습과 계약학과 진학 지원 등 국내외 근무가 가능한 글로벌 인재 양성**
 - ① (3학년 1학기) 채용대상자 확정('11년 18명)
 - ② (3학년 2학기) 아진USA(아진산업 미국 법인) 현장실습 및 어학교육(3개월)
 - ③ (졸업) 채용후 계약학과 진학(계명문화대학 아진금형학과)
 - * 계약학과 2년차에 미국 법인 파견 근무

③ 자격 취득을 위한 현장교육

- 향해사/기관사 4급 자격 취득요건인 1년간 승선실습을 위해 **3학년내내 취업연계된 산업체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통해 현장실습**
 - (취업연계 산업체 실습)
 - ① (2학년) 산업체 장학생 선발
 - ② (3학년) 산업체 선박 승선실습 1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습)
 - ① (3학년 2~7월) 연수원 실습선 승선 실습
 - ② (3학년 2학기) 구직활동을 통해 산업체 상선 승선실습(6개월)

- 간호조무사 시험 자격인 780시간 병원실습을 이수하기 위해 1~2학년 방학중 병원 실습하고, 자격취득후 취업연계 현장실습
 - ① (1학년 겨울, 2학년 여름 및 겨울 방학) 병원실습
 - ② (3학년 7월) 자격시험 원서접수
 - ③ (3학년 9월) 자격시험
 - ④ (3학년 11월) 취업연계 현장실습

4] 지역 기업-학교간 교류를 통한 진로탐색 및 취업연계 현장교육

- 교과부와 지경부는 지역 우수기업 탐방프로그램(희망이름 프로젝트)를 통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의 현장 진로탐색과 취업연계 지원
 - ① ('12.3~4월) 산업단지공단 주관 지역별 고졸채용 희망 우수 기업 발굴
 - ② ('12.3~4월) 시 도교육청별 사업참여 학교 모집
 - * 특성화고 32개교(1,000명), 마이스터고 21개교(1,000명)
 - ③ ('12.5~7월) 직무기술 및 직업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학생 기업 탐방 실시
 - * 희망기업은 채용면접 병행
 - * 취업교육, 인턴 및 채용박람회 설명회 등과 연계 지원

<붙임 2>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개정(안)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2조(현장실습 기간 및 장소) ① 현장실습 기간은 19 . . . ~ 19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은 “갑”의 산업 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2조(현장실습 기간 및 장소) ① 현장실습 기간은 20 . . . ~ 20으로 한다. ②(현행과 같음)	· 연도 변경
제3조(현장실습방법) ①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의거 “갑”이 “병”과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②(공고 『2·1 체제』 직원 교육훈련의 경우)현장 실습기간 중 직업훈련 전용시설에서 3월이상의 집체훈련을 실시한다. 다만, 이 집체훈련은 다른 직업훈련 실시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현장실습방법) ①(현행과 같음) ②“병”은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장실습담당자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교사가 참여하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갑”과 현장실습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다만 “갑”의 산업현장시설에서 현장실습하는 현장실습생이 적어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갑”과 “병”의 합의로 그 구성을	· 기존 제4항의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기술 변경 및 제2항의 2.1체제 삭제

<p>③“갑”은 “을”이 1월에 1일 이상 “을”이 소속된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출석하여 <u>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u></p> <p>④“갑”은 “병”과 협력하여 <u>현장실습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실습 담당자와 직업교육훈련 기관의 직업교육훈련 교사가 참여하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u></p>	<p><u>하지 않을 수 있다.</u></p> <p>③“갑”은 “을”이 1월에 1일 이상 “을”이 소속된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출석하여 <u>직업교육훈련 및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u></p> <p>④“병”은 “을”의 <u>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계획, 현장실습방법, 준수사항, 관련법 등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교육내용은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실습 시 학생이 직업교육훈련 뿐 아니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 · 직업교육훈련기관, 학교에 대해 학생의 현장실습 이전 사전교육의무화를 통해 현장실습 내실화 도모
<p>제4조(사업주의 의무) “갑”은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p> <p>1.“을”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현장실습부서에 배치하고, “을”이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순환실습기회를 제공한다.</p> <p>2.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공구, 재료 등을 준비한다.</p> <p>3.현장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을”의 현장실습을 성실하게 지도한다.</p>	<p>제4조(사업주의 의무) “갑”은 현장실습이 <u>교육과 근로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실시되도록</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p> <p>1.-4. (현행과 같음)</p>	

<p>4.“병”이 <u>현장실습계약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하는 한편 그 확인결과를 현장실습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u></p> <p><신 설></p> <p><신 설></p>	<p>5.“을”에게 「<u>근로기준법</u>」, 「<u>산업안전보건법</u>」 등 <u>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p> <p>6.“을”에게 <u>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의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근로기준 등 노동관련 법령 교육을 의무화 ·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여 안전한 실습환경 조성
<p>제5조(현장실습생의 권리) ①“을”은 현장실습시 산업현장의 적응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p> <p>②“을”은 현장실습기간중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산업재해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③“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p>	<p>제5조(현장실습생의 권리) ①~③(현행과 같음)</p>	
<p>제7조(현장실습 시간과 휴식) ①현장실습시간은 1일에 <u>__시간(현장실습초기의 적응기간__일은__시간)</u>으로 하되 근로기준법이</p>	<p>제7조(현장실습 시간과 휴식) ①현장실습시간은 1일에 <u>__시간(현장실습초기의 적응기간__일은__시간)</u>으로 하되 1일 7시간 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에 있어서 장시간 실습을 억제하기 위해 1일 7시간으로 실습시간을 제한하되 1시간 1일

<p>정한 근로시간 이내로 한다.</p> <p>② 현장실습 중 휴식시간은 ___분(집체교육훈련시 1시간당 ___분)으로 한다.</p> <p>③ 휴일 및 휴가는 “갑”이 <u>취업규칙으로 정한 날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내로 한다. 다만, “갑”이 “을”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1일에 1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u></p> <p>②(현행과 같음)</p> <p>③ 휴일 및 휴가는 “갑”이 <u>정한 취업규칙을 준용하되, 1주 2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u></p> <p>④ “갑”은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 및 휴일에 “을”에게 <u>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u></p>	<p>연장실습 허용</p> <p>· ‘11.7.1 5인 이상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12년 주5일제 수업 도입 등을 감안하여 실습생에 1주 2회 이상 휴일보장</p> <p>· 현장실습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시간 실습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 보호조항을 준용하여 야간 및 휴일 현장실습 금지</p>
<p>제8조(여성과 <u>미성년자의 특별보호</u>)</p> <p>①(“을”이 여성이거나 18세 미만인 경우) “갑”은 “을”을 <u>근로기준법시행령 제37조 별표2에서 정하는 유해·위험한 실습에 종사시키지 못한다.</u></p> <p>②(“을”이 18세 미만인 경우)</p>	<p>제8조(여성과 <u>18세 미만자의 특별보호</u>)</p> <p>①(“을”이 여성이거나 18세 미만인 경우) “갑”은 “을”을 「<u>근로기준법</u>」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위험업무에 <u>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 조문변경에 따른 수정 및 실습생의 지위에 맞추도록 ‘종사’라는 표현을 삭제</p> <p>· 제7조 제1항에서 현장실</p>

<p>현장실습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u>초과하지 못한다.</u> 다만, “갑”이 “을”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p> <p>③(“을”이 <u>여자이거나 18세 미만인 경우</u>) “갑”은 “을”의 동의를 <u>없는 한 야간(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 사이)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키지 못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④(“을”이 <u>여성인 경우</u>) “갑”은 “을”이 <u>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무를 주어야 한다.</u></p>	<p>습생에 대해 미성년자의 근로시간에 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별도의 특별보호 조항 삭제</p> <p>· 제7조 제4항 신설로 현장실습생에 대해 야간 및 휴일실습을 제한함에 따라, 동 조항 삭제</p> <p>· 여성 실습생은 월 1일의 생리휴무를 주도록 함</p>
<p>제9조(현장실습 수당, 식비 및 용품 등)</p> <p>① 현장실습수당은 다음과 같이 매월 ___일에 지급하기로 하되, <u>연장현장실습시간(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의 현장실습시간을 넘은 시간)과 야간현장실습 또는 휴일현장실습에 대해서는 시간당 ___원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u> 단 “갑”은 “을”이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하거나 무단 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p>	<p>제9조(현장실습 수당, 식비 및 용품 등)</p> <p>① 현장실습수당은 다음과 같이 매월 ___일에 지급하기로 하되, <u>연장현장실습시간(제7조제1항의 현장실습시간을 넘은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___원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u> 단 “갑”은 “을”이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하거나 무단 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p>	<p>· 현장실습시간 관련 규정 개정, 야간 휴일실습 금지에 따른 자구수정</p>

나 무단 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현장실습수당을 지급한다.	현장실습수당을 지급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안전·보건상의 조치) “갑”은 “을”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을”에게 <u>안전·보건교육 및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제12조(안전·보건상의 조치) “갑”은 “을”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u>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가스·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한다.</u>	· 안전·보건상의 조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
제13조 (재해보상) “을”이 현장실습도중 그 현장실습에 의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u>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규정에 준하는 재해 보상을 한다.</u>	제13조(재해보상) “갑”은 “을”이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 <u>산업재해보상보험법</u> 」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다만, “갑”의 사업이 「 <u>산업재해보상보험법</u> 」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u>산업재해보상보험법</u> 」의 보상에 준하는 재해 보상을 한다.	· 현장실습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맞게 수정
제15조(현장실습내용의 변경) “갑”은 현장실습생의 소질·건강·기능 습득의 정도 또는 기타	제15조(현장실습내용의 변경) 현장실습생의 소질·건강·기능 습득의 정도 또는 기타의 사유	· 문구수정

의 사유로 인하여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로 인하여 “갑”이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7조(현장실습중단 방지) “갑”은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을”의 현장실습이 중단될 경우에는 “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다른 현장실습 산업체로 “을”을 알선하는 등 “을”의 현장실습이 중단되지 않도록 <u>노력하고, 이 경우 “갑”은 “병”과 미리 협의한다.</u>	제17조(현장실습중단 방지) “갑”은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을”의 현장실습이 중단될 경우에는 “병”과 협의하여 “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다른 현장실습 산업체로 “을”을 알선하는 등 “을”의 현장실습이 중단되지 않도록 <u>노력하여야 한다.</u>	· 문구수정
제18조(취업) “갑”은 현장실습수료자에 대하여는 <u>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제18조(취업) “갑”은 현장실습 수료자에 대해서는 <u>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 문구수정
제19조(수료증명서) ① “갑”은 현장실습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을”에게 현장실습 수료증명서를 교부한다.	제19조(수료증명서)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을”의 현장실습이 종료된 경우 “갑”은 “을”에게 현장실습 수료증명서를 <u>교부한다.</u>	· 문구수정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p><신 설></p>	<p>제21조(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특례) “갑”과 “을”이 현장실습계약과 함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장실습생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근로계약에 따른다.</p>	<p>·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과 채용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 과정의 근로조건은 해당 근로계약을 따르도록 명시함</p>
--------------------	--	--

<붙임 3>

시도교육청의 현장실습 운영지침(안)

1. (현장실습 실시) 학교는 학생의 전공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생에게 적합한 현장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산업체 현장실습이 어려운 경우나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다.
2. (현장실습의 시기) 현장실습은 1~3학년에 걸쳐 학기 중 전일제, 분기별 집중이수, 방학 중 인턴십, 학기 집중이수, 학년 집중이수 등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3. (현장실습의 목적과 방법) 현장실습은 학교와 산업체의 여건, 학생의 학년 및 요구 등을 감안하여 진로탐색을 위한 현장견학과 체험, 교육의 현장성 강화 및 실무역량 배양을 위한 능력개발형 현장실습, 기업 맞춤형 역량 개발 및 취업을 위한 현장실습 등 다양한 목적과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4. (연간 현장실습계획 수립 및 운영)
 - ① 학교는 현장실습계획을 학교 구성원·산업체 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해야 한다.
 - ② 현장실습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독립교과로 편성하거나 전문교과 일부에 포함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현장실습은 교육과정 운영단위에 포함하여 이수 단위는 학교의 장이 학교 구성원 등의 협의를 거쳐 적절한 이수단위를 결정하도록 한다.
 - ④ 학교는 연간 현장실습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를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실습계획이 수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산업체 선정)
 - ①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는 학교의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되어야 하며, 이때 학교는 학생의 전공 분야, 산업체에서 실시할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 ②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적절성은 산업체가 제공하는 산업안전·보건 교육, 현장실무교육, 기타 학생에 대한 각종 지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현장실습 산업체를 결정할 때에는 산업체를 사전 방문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실습이 가능한 지를 판단해야 하며, 이 경우 관계부처와 기관 및 교육청이 제공하는 산업체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6. (현장실습협약 체결)

- ① 학교는 학생의 현장실습을 내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실습 산업체와 현장실습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단순 견학이나 체험이 아닌 능력개발형이나 취업조건부 현장실습 등 산업체에서 학습과 일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학교는 학생과 산업체의 장과 함께 실습협약(현장실습표준협약서 참조)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실습협약 내용이 노동관계법령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청 등을 통해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④ 학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생의 현장실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7. (학생 지도 철저)

- ① 학교는 학생이 현장실습 시작 전에 기업체 소개, 산업안전 및 보건, 근로관계법, 직업윤리의식 및 학생의 책임·의무·권리 등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 ② 학교는 주기적으로 학생이 제대로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지 산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추수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 ③ 산업체 방문 결과 실습계획이나 실습협약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는 등 현장실습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체와 협의하여 실습내용 변경, 실습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 학교는 실습교육의 내실화 및 학생 지도를 위해 산업체의 현장실습 담당자를 (가칭) '산학협력교사' 등으로 위촉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8. (교과 이수)

- ① 학기 중 전일제 운영의 경우에는 해당요일에는 전문교과만을 편성하도록 하고, 특정학년과 학기에 집중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교과의 이수는 현장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실습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보통교과는 편성·운영하지 않도록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보통교과가 편성된 상황에서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현장실습을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교과의 다양한 이수방안(방송고 활용, 주말반 운영, 방학 중 이수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여야 한다.
9. (교과의 평가) 학생의 현장실습활동에 대한 평가는 산업체와 학교의 평가를 종합하여 산출하도록 한다. 이 경우 학교는 학생평가에 대한 학교와 산업체의 역할과 책임을 산업체와 체결하는 현장실습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현장실습 결과 평가)

- ① 학교는 현장실습 결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교육청은 학교가 제출하는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교육청 차원의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른 교육청과 산업체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현장실습 결과 평가를 위해 현장실습 운영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지침(안)은 시·도별 상황에 맞추어 교육청별 지침이나 규정 등에 반영